

위원회의 운영자본기금에서 자금을 제공해야 하는 공동 프로젝트의 기준

1. 프로젝트는 위원회가 위임한 활동의 범위 내에 속해야 한다.
2. 프로젝트의 혜택은 모든 계약당사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3. 프로젝트에 자금이 제공되는 경우 프로젝트 제안서에는 계약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혜택들이 기술되어야 한다.
4. 프로젝트는 각 계약당사자의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예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그러한 예산을 서로 상계할 수 없다. 신규 프로젝트는 각 계약당사자가 이미 승인하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대체할 수 없다.
5. 프로젝트는 태평양언어의 생태에 대한 이해를 향상 시키거나 또는 이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나 보호를 증진 시켜야 한다.
6. 프로젝트는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지속 적으로 자금을 제공받지 않는다.
7. 프로젝트는 위원회의 채무가 될 수 있는 지속적인 비용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8. 프로젝트는 자금 제공을 승인 받기 전에 모든 계약당사자들의 총의를 얻어야 한다.